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 학 철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누구나 다 알고 지켜 야 할 행동규범이며 준칙인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의 법은 누구나 다 알고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며 준칙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제10권 119폐지)

민사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대표적인 법률사실로 되는 조건부적민사법률 행위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것은 민사실천에서 그로 인한 법적효과를 바로 적용하 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는 해당 민사법률행위의 효력발생과 소멸이 일정한 조건에 의존하게 되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설정한 해당 조건에 따라 민사법률행위의 효력발생과 소멸이 이루어지는 민사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와 관련한 법적기초는 공화국민법 제30조를 들수 있다. 여기에서는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는 일정한 조건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이다.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서 해당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위해 당사자들이 합의로 부속시킨 조항을 말한다.

실례로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해당 상품이 확보되는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것을 들수 있다. 이때 매매계약은 체결되였지만 매매계약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권리 행사와 의무리행은 상품확보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부여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일방 혹은 쌍방당사 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며 그에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서 당사자들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위한 조건을 별도로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사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인정하고있다.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은 해당 조건의 실현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사관계에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그것이 성립될 때 곧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성립되지만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조건의 실현에 따라 발생하거나 소멸되게 된다.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조건은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조건은 우선 장래에 발생하게 되는 사실이다.

조건으로는 반드시 법률행위가 성립될 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만이 될수 있다. 만일 법률행위가 성립될 때 이미 발생한 사실이거나 과거의 사실이라면 법률행위의 조건 으로 될수 없다. 조건은 또한 불확정한 사실이다.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서 해당 조건은 그 발생자체가 미정의 사실로서 당사자들이 앞으로 그 발생을 예측할수 없는 사실이여야 한다. 즉 조건부적법률행위는 앞으로 발생할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대되는 사실만을 조건으로 할수 있다.

해당 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거나 장래 그 발생을 전혀 기대할수 없는 사실은 조건으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 발생을 기대할수 없는 사실을 조건으로 설정하였다면 이에 기초한 민사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되며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그것은 조건을 설정하지 않은것으로 된다.

조건은 또한 당사자들이 약정한 사실이다.

민사법률행위의 조건으로는 법률행위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정한 사실이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류의할것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에 대하여서는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설정할수 없다는것이다. 실례로 새로 창설되는 합작기업은 해당 권 한있는 국가기관의 심의비준을 받고 등록한 다음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수 있다고 규정한것을 들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법적요구로서 당사자들은 그것을 응당 준수 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이러한 법이 정한 조건을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면 해당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조건은 또한 합법적인 사실이다.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서 당사자들은 합의로 조건을 설정할수 있지만 해당 조건은 법이나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부합되는 사실이여야 한다. 이것은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요구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법이나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위반되는 사실을 민사법률행위의 조건으로 설정할수 없다. 법이나 사회주의생활규범에 어긋나는 사실을 조건으로 설정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한 행위로서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

일련의 민사법률행위는 조건설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건을 설정할수 없는 민사법률행위에는 상속의 접수나 포기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민사법률행위들에 조건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것은 상대방의 리익과 전반적인 민사관계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요구와 관련된다. 만일 조건을 설정할수 없는 민사법률행위에 조건을 설정하였으면 해당 법률행위전체를 무효로 하게 된다.

조건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할수 있다.

조건은 해당 민사법률행위에 미치는 작용에 따라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구분한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민법이 규정하고있는 주되는 조건들이다.

정지조건은 민사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을 말한다. 정지 조건은 당사자들의 권리행사와 의무리행을 지연시킨다는 의미에서 연기조건이라고도 한 다. 실례로 법인들사이에 장마철에 큰물이 나는 경우 대형양수기를 일정한 기간 빌려주기 로 한 빌리기계약을 들수 있다. 여기서 큰물의 발생은 해당 빌리기계약의 효력을 발생시 키는 정지조건으로 된다.

정지조건이 설정된 민사법률행위는 일단 성립되였지만 그 법적효력은 해당 조건이 실현되기 전까지 정지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정지조건이 설정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들 의 권리의무는 이미 확정되였지만 조건이 실현되기 전까지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수 없 으며 행사하는 경우에도 조건부로 하여야 한다. 우의 실례에서 대형양수기빌리기계약은 체결되였지만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미 체결한 빌리기계약은 당사자들사이에 법적구속력을 가질수 없다.

정지조건의 특징은 그것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조건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정지조건이 설정된 법률행위에서 그 법적효력은 해당 조건의 실현에 기초하여 발생하게 된다.

해제조건은 민사법률행위의 소멸을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을 말한다. 해제조건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소멸시킨다는 의미에서 소멸조건이라고도 한다. 실례로 두 기업소사이에 종자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해당 종자가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종자공급계약은 소멸된다고 조건을 붙인것을 들수 있다. 여기서 해당 종자에 대한 검사불통과는 종자공급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조건으로서 만일 종자가 검사에 통과되지 못하면 종자공급계약도 동시에 소멸된다.

해제조건이 설정된 민사법률행위에서 해당 조건이 실현되면 법률행위의 법적효력은 소멸되게 된다. 즉 해제조건이 설정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행사와 의무리행은 개시되였지만 해당 조건이 실현되면 당사자들은 더는 권리를 행사할수 없고 의무를 리행 하지 않아도 된다. 우의 실례에서 종자를 공급할 공급자의 의무는 해당 계약에서 조건으로 설정한 종자검사가 통과되지 못하면 소멸되게 된다.

해제조건의 특징은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소멸과 관련한 조건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해제조건이 설정된 법률행위에서 해당 조건이 실현되면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는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조건은 행위자의 의사표시의존여부에 따라 행위자의 의사에 기초하는 조건과 행위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분할수 있다.

행위자의 의사에 기초하는 조건은 해당 조건의 실현이 행위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건이다.

행위자의 의사에 기초하는 조건의 특징은 해당 조건의 실현여부가 전적으로 법률행 위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존하게 된다는데 있다.

행위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는 조건은 해당 조건의 실현이 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제3자의 의사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이다.

행위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는 조건의 특징은 조건의 실현여부가 행위자가 아니라 제3자의 의사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존하게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설정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은 제3자의 의사나 객관적인 사실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서 해당 조건의 실현은 그에 따르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정지조건이 실현되면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으며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해제조건이 실현되면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되며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권리를 행사할수 없으며 의무를 리행할 필요가 없다.

해당 조건이 실현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기타 행위가 없어도 법률행위는 응당 효

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공증이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의 실현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조건의 형태에 따라 해당한 법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지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며 해제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것으로 인정한다.

조건부적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부당하게 조건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앞당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자기의 리익을 위해 부당하게 조건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조건은 이미 실현된것으로 인정하고 부당하게 조건의 실현을 앞당기는 경우해당 조건은 실현되지 않은것으로 인정한다. 이것을 조건실현의 의제라고 한다.

조건실현의 의제는 두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조건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앞당기는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당사자여야 한다는것이다. 즉 조건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앞당기는 당사자는 조건의 실현으로 리익을 얻게 될 당사자여야 한다. 만일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조건의 실현을 방해 하면 조건실현의 의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조건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앞당기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당사자의 어떠한 행위가 부당한 행위로 되는가는 해당 법규범이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부적법률행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은 조건이 실현되기전에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당사자들은 해당 조건의 실현을 통해 앞으로 그로 인한 재산적리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나 희망을 민법에서는 기대권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있다.

해당 조건이 실현되기 전에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손해보상책임을 제기할수 있다.

우리는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민사실천에 정확히 구현 함으로써 그를 통한 당사자들의 재산상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 여야 할것이다.